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여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는 바와 동일하게 「유아교육법」 또한 유치원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법률 제19737호, 2025.3.18.개정, 2025.9.19.시행)됨.

이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치원에 두는 교원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 정함(안 제23조)

나. 유치원에 두는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 정함(안 제23조의2)

다. 유치원에 두는 직원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 정함(안 제24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을 “(유치원 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④ 유치원 업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순회교사,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른 영양교사 등 유치원에 두는 교원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 정한다.

제23조의2의 제목 “(수석교사의 배치기준)”을 “(수석교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을 “법 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직원의 배치기준)”을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할청”을 “법 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유치원 교원의 배치기준) ① ~ ③ (생략) ④ 유치원에는 원활한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유치원 업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직교사의 명칭, 종류 및 배치기준 등 보직교사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청이 정한다.	제23조(유치원 교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유치원 업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순회교사,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른 영양교사 등 유치원에 두는 교원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 정한다. <삭제>
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u>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다.</u>	제23조의2(수석교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법 18조</u> <u>에 따른 지도·감독기관</u>----- -----.
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에는 필	제24조(직원) ----- -----

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u>관할청</u>이 정한다.	----- ----- -- <u>법 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7163